

청년, 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6. 13.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하였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 (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귀농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및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0-5614)
			주무관	김수진 (044-200-5615)

□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제1항)
 - * 「귀농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임대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함(제2항)
 -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유사입법례) 도시농업법, 간척지법, 경제자유구역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 (임대차기간)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3항)
 - (사전협의)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제4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람(어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②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
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2.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
약에 관한 사항

3.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
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④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